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4
------	------

2017. 2.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9일, 이윤희 의원의 25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12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2. 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윤희 의원)

-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였으며, 향후 시 재정분야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사업제안 대상을 개인이외 단체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변경 등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3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수행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확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등의 조치를 통해 시 재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품질의 향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참여예산 심사기준의 변경(1안 제18조의2제5호 신설)

- 1안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기준을 개정해 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을 제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매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시정참여형(350억원)과 지역참여형(150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자치구별로 구성된 지역회의 혹은 동별 자치회의를 통해 제안하고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 시민 투표(엠보팅)와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으나 선정된 상당수의 사업이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함¹⁾.
-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시행하는 것이 참여예산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사업 제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속 성장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한 사업을 배제하도록 강제할 경우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구분이나 통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판별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규모의 신설(2안 제6조제2항 신설)

- 2안은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 현재 연간 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공모의 규모를 해당 연도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규모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증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정율로 연동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계획을 통해 연간 50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예산 적정 규모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됨.
- 개정안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정할 경우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규모는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예산(20조 6,398억)의 1000분의 3인 619억 1,943만원 이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보다 약 120억원 순증 효과가 있음.
- 개정안이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 이상을 참여예산사업의 규모로 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15조 2,017억원)을 기준으로

1) 실제 사업명과 대상이 다르지만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CCTV 설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시가 매년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되고 실제 선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설정된 500억원 규모가 사업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참여예산 전체 규모의 정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일반회계예산의 일정 비율로 참여예산 규모가 연동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참여예산 규모를 조례로 정해 확정하는 것이 자칫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전재원 등을 고려할 경우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이라는 규모가 다소 과도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로 제약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라.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3안 제9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예산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대상을 기존의 주민외에 단체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이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 과정이 별다른 시정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주민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 다만, 이와 같은 사업제안 자격 확대가 참여기회 확대나 제안된 사업의 품질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칫 소수의 단체를 통한 사업제안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요구됨.

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사항 변경(3안 제15조 및 제16조, 제19조)

- 안 제15조와 제16조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해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우선 이를 위해 안 제15조제2항은 250명으로 제한된 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3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 가운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던 위원 선정방식을 예산학교 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한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 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보다 50명 확대하는 조치는 위원회 활동영역의 확대나 직접 민주주의 기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위원회 위원의 선정 방식 변경은 기존의 선추첨 후교육 방식에서 선교육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학교 개방을 통한 시민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과 함께 예산학교 교육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선임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산학교 교육기회 개방을 통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참고자료 1).
- 안 제16조제2항은 1회 중임규정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극대화해 참여예산제도 자체 운영의 효율화를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가운데 약 30%의 위원이 중임되고 있으며, 대다수 위원이 신입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만, 중임대신 연임을 허용하고 연임 위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칫 2년마다 위원 대다수가 교체되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위원의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중임제한 규정의 삭제로 연임이후 1~2년이 지나고 다시 위원에 반복 선임되는 등 독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위원회 위원 중임 및 연임 내역>

구분	위원수	연임(중임)	신임공모	추천
2015년	228	64	148	16
2016년	232	69	148	15

바.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3안 제19조의1 신설 및 제20조 삭제, 제22조, 제25조)

- 안 제19조의1 민관협의회 신설과 안 제20조의 삭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함.
- 현재는 제안된 각종 사업에 대해 업무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엠보팅, 위원회 총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의 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실·국·본부별로 구성되는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현장조사와 토론을 거쳐 분야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기능분과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던 분과위원회를 대신해 민간전문가와 해당 사업담당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명 내외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참여예산 심사과정 개정의 핵심사항임.
- 그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해 연 4~6회 정도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하위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심사 과정에서 지역안배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2016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위원수	개최 횟수	비고
총 회	232	4	
운 영 위 원 회	21	4	
교 통 주 택 분 과	26	6	
도 시 안 전 분 과	28	3	
문 화 관 광 분 과	24	4	
복 지 분 과	28	5	
여 성 건 강 분 과	23	6	
일 자 리 분 과	26	6	
청 년 분 과	26	3	
청 소 년 분 과	23	3	
환 경 공 원 분 과	28	5	
디 지 털 혁 신 분 과	23	2	시범운영

- 반면 위원회 위원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는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숙의를 거칠 수 있어 선정되는 사업의 구체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실·국·본부 중심의 민관협의회 심사는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시민의 의사보다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부서의 의견이나 우선순위가 앞서 반영될 우려가 있음.

사. 재정 및 실무지원 사항 변경(3안 제28조)

- 안 제28조는 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해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원봉사 개념에서 지급하던 기존 8천원 수준인 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으로 현실화 되면서 위원들의 위상강화와 책임감 고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위원회와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1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시의 참석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임(참고자료 2).

- 현재의 위원회 참석률에 따라 관련예산을 추계할 경우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연간 약 2,200만원의²⁾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를 통해 약 2,2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출장여비,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합해 2017년 6,7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44
----------	---------

제안년월일 : 2017년 2월 2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신설되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9조의1제2항).
- 나. 일부 조항에 인용된 조문 등을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제6항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6항 중 “제8조제2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안 제19조의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안 제19조의1제4항 중 “공무원이”를 “회장은 공무원이”로 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위원회, 협의회”를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u>의견</u>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주민 및 단체의 의견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250</u>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④ (생략)</p> <p>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u>공개 모집절차</u>에 의해 선정된 자</p> <p>2. ~ 5. (생략)</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300</u>명-----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1. ----- <u>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추첨방식</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u>제 8조제2항</u>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u>제 25조제10항</u>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p>
<p>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자</p>	<p>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삭제></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u>중에서 제8조제2항에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②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정수의 1/2범위에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②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기능) (생략)</p> <p>1. ~ 3. (생략)</p> <p>4. <u>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u>분과위원회</u>에 심사 부의</u></p> <p>5. <u>주민 및 지역회의, <u>분과위원회</u>의 의견 심의·조정·결정</u></p> <p>6. <u>총회·<u>분과위원회</u> 개최</u></p> <p>7. ~ 10. (생략)</p>	<p>제19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민관예산협의회</u>-----</p> <p>5. ----- <u>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u>-----</p> <p>6. ---- <u>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u></p> <p>7. ~ 10.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신설></p>	<p>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u>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② <u>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③ <u>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u>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④ <u>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④ <u>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신설>	⑤ <u>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⑥ <u>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⑦ <u>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u>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⑧ <u>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u>	<개정안과 같음>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u>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u></p> <p>② <u>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u></p> <p>③ <u>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 10개 이내로 구성한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④ <u>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공무원 간사가 된다.</u></p> <p>⑤ <u>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u></p> <p>⑥ <u>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u></p> <p>⑦ <u>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⑧ <u>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 회의를 개최한다.</p> <p>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 ----- ----<u>기능분과</u>-----.</p> <p>② ----- -----<u>기능분과</u>----- -----.</p> <p>③ ----- <u>기능분과</u>----- -----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p>	<p>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u>15명</u>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u>과반수</u>를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 ⑪ (생략)</p>	<p>----- -----<u>25명</u>----- -----<u>2분의 1</u>----- ---</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p> <p>② 시장은 <u>위원회, 협의회</u>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위원회, 협의회</u>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u>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u>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견” 을 “주민 및 단체의 의견”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250명” 을 “30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공개모집절차” 를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제4호 중 “분과위원회” 를 “민관예산협의회” 로 하고, 제5호 중 “분과위원회” 를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 로 하며, 제6호 중 “분과위원회 개최” 를 “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 로 한다.

제1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④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20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과위원회”를 각각 “기능분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과반수를”을 “2분의 1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위원회, 협의회”를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u>의견</u>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주민 및 단체의 의견</u> -----.</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2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④ (생략)</p> <p>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u>공</u> <u>개모집절차</u>에 의해 선정된 자</p>	<p>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300명</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1. ----- <u>예산</u> <u>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u> <u>방식</u>-----</p>

현행	개정안
<p>2. ~ 5. (생략)</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 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p>
<p>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정수의 1/2범위에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삭제></p> <p>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기능) (생략)</p> <p>1. ~ 3. (생략)</p> <p>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p> <p>5.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p> <p>6. 총회·분과위원회 개최</p> <p>7. ~ 10. (생략)</p>	<p>제19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민관예산협의회-----</p> <p>5. -----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p> <p>6. ----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p> <p>7. ~ 10.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p> <p>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p>

현행	개정안
<p>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 회의를 개최한다.</p> <p>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 및 <u>분과위원회</u>는 재적위원 <u>과반수</u>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u>과반수</u>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 ----- -----<u>기능분과</u>-----.</p> <p>② ----- -----<u>기능분과</u>-----.</p> <p>③ ----- <u>기능분과</u>----- -----.</p>
<p>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u>15명</u>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u>과반수</u>를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 ① (생략)</p>	<p>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5명</u>----- -----<u>2분의 1</u>-----.</p> <p>③ ~ ① (현행과 같음)</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회의 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